특별휴가 부여기준

<2007.10.5.개정> <2011.9.1.개정> <2012.11.16.개정> <2017.02.14.개정> <2019.01.01.개정>

구 분		특별휴가일수
결 혼	본 인	7 일
	자 녀	2
	형제/자매	- 등
	배우자 형제/자매	1 일
회 갑	무모모	1 일
	모 기	1 일
칠 순	부모	1 일
	모 파 파	1 일
팔 순	巾	1 일
	모 파 파	1 일
	본인	-
사 망	부 모	7 일
	배우자	7 일
	비 무 민	7 일
	조부모/외조부모	2 일
	승중상	6 일
	자 녀	3 일
	형제/자매	2 일
	배우자 형제/자매	2 일
	백숙부모/외숙부모	1 일
대소상	부모,배우자	1 일
	빙부모	
해 산	배우자	4 일
징병검사, 예비군 및 민방위소집		필요기간
참정권의 행사		필요기간
기타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		필요기간

^{*} 적용기준 : 경조사유 발생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, √회갑/칠순/팔순의 경우 공문서상 해당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 √휴가일이 3일 이하인 장례의 경우, 발인일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 (단, 발인일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)

[√]자녀 결혼이 주말일 경우 발생일 전후로 사용 가능 √배우자 출산의 경우, 출산일로부터 한달 이내 사용 가능

경조금 지급기준

<2005.11.16.개정> <2007.10.5.개정> <2013.01.01.개정> <2017.02.14.개정> <2019.01.01 개정>

		2010.01.01.71137 (2017.02.11.71137 (2010.01.01.71137
구 분		경 조 금
결 혼 (재혼은 제외)	본 인	기본급의 100%
	자 녀	기본급의 100%
	형제/자매	기본급의 20%
	배우자 형제/자매	기본급의 20%
회 갑	부 모	기본급의 50%
	빙부모	기본급의 50%
사 망	본 인	기본급의 200%
	부 모	기본급의 100%
	배우자	기본급의 100%
	빙부모	기본급의 100%
	조부모/외조부모	정액 30만원
	승중상	기본급의 50%
	자 녀	기본급의 100% (사산일 경우 미지급)
	형제/자매	기본급의 50%
	배우자 형제/자매	기본급의 50%
	백숙부모/외숙부모	-
대소상	부모,배우자 빙부모	_
출산축하금	본인 및 배우자	정액 80만원 (다태아 인별지급)
징 집	본 인	기본급의 10%
화재,풍수시 긴급재난	본인 / 가족	기본급 100% 내에서 개별결정

주) 화환 : 기본급 100% 이상 지급 경조사 발생시